

제 276회 정례회
2008. 12. 23.(화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의회운영위원회

심 사 보 고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최광옥 의원 외 7인

(최광옥, 이영복, 강태원, 권광택, 김법기, 이규완, 이필용, 최미애)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 : 2008년 12월 8일 / 2008년 12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6회 정례회(2008년 12월 15일)
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토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최광옥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비 이내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여비지급 기준 신설

나. 주요내용

- 월정수당 조정
 - 월 2,360,000원에서 월 2,640,000원으로 조정(안 제3조)
-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 신설
 - 원격지(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)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비 지급 기준 신설(안 제7조)
- 적용시기 :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위원 김길상)

- 금번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월정수당을 월 2,360,000원에서 월 2,640,000원으로 조정하고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
- 제3조의 월정수당과 제7조의 원격지 회의출석여비 개정규정을 2009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금번 조정된 의정비가 2009년 1 월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 가결”

7. 기타의견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월 2,360,000원”을 “월 2,640,000원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원격지 회의출석 여비지급) 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 당일 출·퇴근이 곤란한 원격지(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)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교통비(일비는 제외한다)·숙박비 및 식비(기준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)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월정수당) ① 의원이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2,360,000원으로 한다. 단,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월정수당) ① 월 2,640,000원.....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원격지 회의출석 여비지급) <u>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 당일 출·퇴근이 곤란한 원격지(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)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교통비(일비는 제외한다)·숙박비 및 식비(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)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7조 (생략)</p>	<p>제8조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발취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33조 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보전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<개정 2008.10.8>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3. 월정수당: 별표 7에 따른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[별표 5] <개정 2008.10.8>

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(제33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 \ 지 급 기준액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 동 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 비 (1일당)
시·도의회 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20,000	46,000	25,000
시·군·자치구의회 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20,000	46,000	25,000

비 고

1.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(같은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 내에서 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 당일 출·퇴근이 곤란한 원격지(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)나 도서지역(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)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(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)·숙박비 및 식비(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)를 지급할 수 있다.
2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



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



수신자 수신처 참조

(경유)

제목 2009년도 충청북도의원 의정비 결정 알림

우리 위원회에서 2009년 충청북도의원 의정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알려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- 1. 2009년도 의정비 : 4,968만원
 - 가. 의정활동비 : 1,800만원
 - 나. 월 정수당 : 3,168만원
- 2. 여 비 :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따름.

붙임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문 1 부. 끝.

생 결	의 결	이 결	결	사무처장
접수일시	2008. 11. 27	번호	256기	총무담당관
처 럽과	총무담당관실	부서	신정관	총무팀장

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

수신처 충청북도지사, 충청북도의회의장

★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사무관 위원장

협조자

시행 의정비심의위원회-7 (2008.11.27) 접수 ()

우 360-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(문화동) /http://www.cb21.net

전화 043) 220-2133 /전송 043) 220-2119 / taejin1968@cb21.net / 공개

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문

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를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정함.

- 2009년 의정비 : 년 4,968만원
 - 의정활동비 : 년 1,800만원
 - 월 정 수 당 : 년 3,168만원
- 여 비 :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따름.

2008. 11. 27.

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

